

2023 공연유통협력 지원 사업 공모 FAQ

2022.10.27.(목) 업데이트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공연예술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2년 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2023 공연유통협력 지원』 사업 공모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FAQ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FAQ를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 신청조건, 협력요건 등

Q1. 민간을 제외한 국공립공연단체·공연장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2022년 공모와 달리 2023년에는 민간공연단체, 민간공연장·시설, 민간기획·제작사만 신청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단체, 국공립공연장은 신청주체의 협력기관·단체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주체와 협력기관·단체간의 구체적인 협력요건은 무엇인가요?

→ 2023년도는 협력요건을 (1)예산협력, (2)공간협력, (3)인적협력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협력기관·단체는 신청서상에서 해당되는 협력방식을 선택, 표기하시면 됩니다.

예산협력은 민간 및 국공립기관·단체·공연장 모두 필수사항이며, 공연장은 공간협력이 필수사항입니다. 인적협력은 모든 협력주체의 권장사항입니다.

Q3. 지원 가능한 협력형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① **(민간공연단체-국공립공연단체 또는 민간공연단체 협력)** 민간공연단체가 국공립 또는 다른 민간공연단체, 공연장·시설과 제작 및 유통을 위하여 협력하는 형태 등
- ② **(민간공연예술축제와 공연장·시설 협력)** 민간에서 기획·주관하는 공연예술축제 참여 작품들을 타 지역의 공연장·시설에서 기획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형태 등
- ③ **(민간공연장시설 제작유통)** 제작역량을 갖춘 민간공연장시설이 제작 및 유통하는 형태 등
- ④ **(민간공연단체·공연장·시설이 국공립공연단체 레퍼토리 활용)** 민간공연단체 및 공연장·시설이 국공립공연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연 레퍼토리 또는 공연권(공연 IP) 사용을 허락받아 국공립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협력에 활용하여 작품 개선 제작, 유통하는 형태 등

Q4. 클래식(음악) 분야의 제작유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클래식(음악)의 장르 특성상 '특정 콘셉트(작곡가, 작품연도, 악기구성)'를 바탕으로, 연주자 중심으로 기존작품을 선별·배치하는 구성도 제작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연은 대부분 기존 음악회와 큰 차별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획적' 요소를 보다 강화하여 클래식 음악만의 협력 제작유통 방식을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Q5. 개인 아티스트와 협력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연단체-공연장·시설-기획·제작사 간의 협력만 가능합니다.

Q6. 공연장·시설·재단 등이 소속 상주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본 사업에 신청하는 공연으로 공연단체와 공연장이 이미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주단체란? 공모 등을 통해서 공연장·시설·재단 등과 상주계약(상주공간 및 연습실 제공 등)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공연 프로그램을 의무로 제공하는 공연예술단체를 말합니다.

Q7. 공모 시점 이전에 서울 외 지역의 공연장으로부터 기획초청 공연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지원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순 기획초청 공연은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단순 기획초청을 넘어서 협력기관·단체 간 구체적인 제작 및 유통계획을 갖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최소 2개 지역에서 총 6회 이상 공연 개최가 최소 수행해야 하는 필수조건입니다.

Q8. 지역 공연장을 대관하여 참여해도 지원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발성 대관공연이 아닌 협력기관·단체 간 구체적인 제작 및 유통 계획이 있어야만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Q9. 공연작품의 유통 계획에 서울 공연이 포함되는 경우, 서울에서 초연 이후 지역에서 공연하는 경우 지원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서울 소재 단체의 경우, 서울 공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 외 17개 광역시도 기준 최소 2개 지역에서 총 6회 이상의 유료 공연을 수행해야 합니다.

서울 이외 지역 소재 단체의 경우, 최소 2개 지역 총 6회 이상의 유료 공연을 수행해야 합니다. 최소 2개 지역에 서울지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Q10. 같은 협력의 내용으로 신청 주체를 바꾸어 중복 지원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신청 주체를 한 곳을 정한 뒤 신청하여야 합니다.

Q11. 대표자가 동일인이고, 여러 사업체를 2개 이상 지역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상호 협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동일한 사업체는 단일 주체로 간주하며, 이 경우 상호 협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기 서로 다른 주체가 본 사업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합니다.

Q12. 신규 창제작 작품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2022년도와 달리 2023년 공모에서는 신규 창제작 작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레플리카, 라이선스 작품의 공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3. 과거에 지자체 또는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제작한 공연작품도 지원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에 타 보조사업을 통해 본 공모와 동일한 공연과 사업으로 제작·유통 관련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4. 야외공연장도 입장권을 유료화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공연 입장권은 최소 10,000원 이상 유료가 원칙입니다.

Q15. 신청주체인 민간공연단체, 민간공연장·시설, 민간기획·제작사의 기준은 무엇 인가요?

→ **민간공연단체 및 기획·제작사**는 국내외에서 최근 3년간 2건 이상 공연 발표 실적이 있는 민간공연단체·법인·기획제작사(단, 일시적 공연권 보유로 유통·배급이 주 사업인 경우 신청 불가)를 말합니다.

민간공연장은, 등록공연장 중 단순 대관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장을 말합니다.

Q16. 「공연법」 제9조에 의한 등록공연장에서만 공연 개최 가능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의 등록공연장 외에 야외 공연장·시설, 복합문화시설, 전국 문화도시가 조성한 문화예술공간, 기업이 운영하는 공간 등에서도 공연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공연이 개최되어야 하며, 등록공연장이 아닌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17. 2개년 공연유통 협력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협력 공연의 제작유통 과정을 2개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과 2024년 2개년간 협력 기관·단체 간 공연을 제작·유통하는 것으로, 다년간의 협력 지원으로 중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트랙입니다.

Q18. 2개년 사업은 어떻게 계획하여야 하나요?

→ 2개년 지원은 기 창작작품을 2개년 동안 유통하는 사업입니다. 최소 1억에서 10억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2023년과 2024년 제작 유통계획을 수립하면 되며, 다만, 동일한 계획으로 2년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예시】

- * (사례 1) 동일한 공연으로 연도별로 다른 지역에서 유통
2023년 : 공연 '가'로 'A' 지역과 'B' 지역에서 공연
2024년 : 공연 '가'로 'C' 지역과 'D' 지역에서 공연
- * (사례 2) 다른 공연으로 연도별로 동일한 지역으로 유통
2023년 : 공연 '가'로 'A' 지역과 'B' 지역에서 공연
2024년 : 공연 '나'로 'A' 지역과 'B' 지역에서 공연
- * (사례 3) 다른 공연으로 연도별로 다른 지역에서 유통
2023년 : 공연 '가'로 'A' 지역과 'B' 지역에서 공연
2024년 : 공연 '나'로 'C' 지역과 'D' 지역에서 공연

Q19. 공모 지원신청 시, 반드시 2024년도의 공연장·시설에서 공연할 계획을 확정해야 하나요?

→ 2024년도 **협력기관·단체도 반드시 결정**되어야 합니다. 2024년도 공연장·시설 또한 2023년과 마찬가지로 확정되어야 하며, 인터뷰 심의에 선정된 단체는 심의 개시 이전에 협약 증빙 필수자료(대관확인서, 협약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Q20. 협력주체는 다수의 신청주체와 협력하여 다수의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각 신청주체와 협력하여 협력주체는 다수의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21. 공간 보유·운영 단체/기관이 협력주체가 되었을 때, 공간협력을 예산협력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협력주체로 참여하는 공간 보유·운영 단체/기관은 예산협력과 공간협력(공간 대관 투자)이 모두 필수 협력사항입니다.

Q22. 신청주체의 조건 '국내외에서 최근 3년간 2건 이상 공연 발표 실적'을 어떻게 증빙하나요?

→ 지원신청서 내, '**I. 신청 및 협력 기관(단체) 정보 - 1. 신청 주체 정보**'에 '**신청주체 이력**'을 기재하시고, 이를 증빙할 자료를 별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최대 3개까지 작성 및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용량이 큰 파일의 경우 이나라도움 첨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저용량 변환 후 첨부

Q23. 신청대상 사업에서 "22년 12월까지 국내에서 1회 이상 전막공연·발표된 기 창작작품"은 반드시 유료화로 진행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전막 트라이아웃 공연 또는 전막 쇼케이스 공연으로 진행한 작품일 경우에 한해서는 '유료화'된 건만 기 창작작품으로 인정합니다.

Q24. 해외 초청 작품을 지역에 유통하는 기획도 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해외 작품을 초청하여 지역 순회하는 형식의 기획은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지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창제작진과 국내 신청 및 협력주체의 협력으로 공연을 제작 및 유통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Ⅱ. 사업예산, 작성요령 등

Q25. 자부담금은 총사업비(보조금과 자부담금의 합)의 10%~50% 조성하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의 10%~50%가 아닌, 보조금과 자부담금의 합계 금액의 최소 10%~50%를 편성하여야 하며, 자부담금 자원 조성 비율은 신청 주체와 협력기관·단체 간 협의하시어 조성하면 됩니다.

【예시】 총사업비(100%) = 자부담금(10~50%) + 보조금(50~90%)

Q26. 협력기관·단체로 참여하는 모든 협력주체는 자부담금 예산 조성에 참여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신청주체를 포함하여 협력기관·단체로 참여하는 모든 주체(공연장, 공연시설, 단체, 기획·제작사 등)는 원칙적으로 자부담금 예산(최소 10%~50%)을 공동으로 조성하여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Q27. 2개년 유통협력 사업예산 지원규모와 편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2개년 유통 협력 사업의 지원규모는 최대 10억원입니다. 공연작품의 준비과정, 투어 규모, 극장 규모, 유통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신청금액을 각 연도별 예산표로 각각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28. 사업 선정 전에 진행된 협력에 대한 예산도 편성 가능한가요?

→ 편성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진행된 것만 인정됩니다. 사업 정산 시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Q29. 공연장/시설, 공연단체의 상근 인력의 보수도 예산 편성 가능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금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정산 시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계약서 등)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조금으로는 편성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십시오.

Q30. 부가세액의 경우, 보조금으로 편성 가능한가요?

→ 사업자 유형에 따라 편성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면세자(간이과세자 포함)의 경우 매입부가세액을 보조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세자(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매입부가세액을 보조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금)로 편성 및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Q31. 본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관람료 수입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공연 수입금이 본 사업을 위해 편성한 자부담금을 초과할 때는 초과한 금액만큼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사업에 재집행하거나, 재투자 시에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Q32. 사업 신청서 프로젝트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 프로젝트 책임자는 신청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책임질 총괄 책임자로, 신청 주체 및 협력주체가 협의하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책임자 1인을 선정, 사업 신청서에 명시하고 인터뷰 심의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Q33. 유료화된 전막 트라이아웃(tryout) 공연과 전막 쇼케이스 공연을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 해당 전막 트라이아웃(tryout) 공연과 전막 쇼케이스 공연이 유료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포스터, 프로그램 북 등과 티켓 예매 내역, 정산 내역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티켓 예매처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는 이메일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romokams@gokams.or.kr)

Q34. 차세대 기획인력의 경력 산정 및 활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차세대 기획인력은 현장 경력 3년 미만의 경력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대상은 대학교 졸업생부터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점으로부터 이전 6개월간 신청 및 협력 주체에 고용된 이력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차세대 기획인력은 최소 1인 필수 활용해야 하며, 최대 2인까지 가능합니다.
(최종 선정 후 교부신청 시, 해당 차세대 기획인력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증명서 등 제출 필수)

Q35. 차세대 기획인력의 월 임금의 편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차세대 기획인력의 월 임금은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월 2,010,580원(세전)을 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면 됩니다. 고용하는 차세대 기획인력은 신청 사업에 참여하는 전담인력이어야 하며 신청주체, 협력주체 및 타 사업장에 기 고용된 인력은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Q36. 차세대 기획인력 연장근무 및 복리후생과 관련 비용도 보조금으로 집행·편성이 가능한가요?

→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 관련 노무비 일체는 보조금이 아닌 자부담금으로 편성·집행하시면 됩니다.

* 주간 근로시간은 유연 근무 적용 시에도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37. 예산 계획 시, 반드시 공연의 '영상 기록물' 및 '사진 기록물'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향후 선정된 공연의 홍보 및 아카이빙을 위하여 공연의 영상과 사진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경우, 지역별 공연의 영상을 모두 기록하지 않아도 되나, 사진의 경우 모든 지역별 공연을 기록하여 정산실적 보고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38. 엑셀양식의 '예산계획안'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제공된 엑셀양식에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 1) 1개년 사업의 경우, 총괄 예산표 외 지역별 공연으로 시트를 나누어 최소 3개의 시트를 작성하시고, 지역별 공연이 늘어나면 시트를 추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2) 2개년 사업의 경우, 2023년 파일과 2024년 파일을 구분하여 2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39. 지원신청서에 협력기관·단체장의 공동날인이 필요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은 지원신청서 제출 단계에서 협력기관·단체장의 공동날인이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청주체와 협력기관·단체 간의 사전 협의 및 협력내용 확인은 필수입니다. 합의된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신청주체가 대표로 날인함으로써 공동서약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1차 서류심의를 통과한 신청주체는 2차 인터뷰심의 이전까지 모든 협력기관·단체와의 협력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날인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